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49
------------	------

발의연월일 : 2016. 12. 8.

발의자 : 염동열 · 박대출 · 김진태

이정현 · 김현아 · 박명재

나경원 · 한선교 · 황주홍

이은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계조사방식이 변화하고 교육통계 및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 관리와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도 「통계법」 및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법에는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누구든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의 법인이나 단체가 식별되는 자료에 대한 요구 및 제공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한 항목에 한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의 자료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직원

2.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

⑨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p>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누구든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의 법인이나 단체가 식별되는 자료에 대한 요구 및 제공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한 항목에 한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거나 이를 관련 전문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의 자료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
정기관의 교원·직원

2.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

⑨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의 조
사대상,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